

학교시설·설비기준령중개정령

(개정 82. 1. 27)

학교시설·설비기준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조의 제목과 동조 제 1항중 “교사대지”를 “교사 또는 원사대지”로, “교사”를 “교사 또는 원사”로 하고, 동조 제 2항중 “교사대지”를 “교사 또는 원사대지”로 한다.

제 3조제 1항중 “각급학교의 체육장(육외체육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을 “각급학교(유치원을 제외한다)에는 체육장(육외체육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두되,”로 하고, 동조 제 2항중 “각급학교의 체육장”을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장”으로 한다.

제 3조제 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 4항중 “체육장”을 “체육장(유원장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동조 제 5항중 “체육장”을 “체육장과 유원장”으로 한다.

③유치원에는 유원장을 두되, 배수가 잘 되거나 배수 시설을 갖춘 입지라야 하며, 그 최소 기준면적은 15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반수가 1반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반마다 50제곱미터를 가산한 면적으로 한다.

제 5조의 제목 “(교사)”를 “(교사 및 원사)”로 하고, 동조 제 1항중 “교사”를 “학교의 교사(유치원의 원사를 제외한다)”로 하며, 동조 제 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⑨유치원의 원사는 학습과 보건위생에 적합한 것으로서 이에 제 1항제 1호의 보통교실, 제 1항제 8호의 관리용 각실, 제 1항제 9호의 보건위생에 관한 각실중 변소(대변기는 반당 1개이상)와 유희실을 두어야 한다.

제 10조제 2항중 “도서·벽지교육진흥법시행령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를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교부령으로 정하는 도서·벽지(이하 “도서·벽지”라 한다)”로 한다.

제 11조중 “도서·벽지교육진흥법시행령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를 “도서·벽지”로 한다.

제 12조의 제목 “(유치원의 타시설이용)”을 “(유치원의 다른 시설이용등)”으로 하고 동조에 제 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유치원은 제 3조제 3항 및 제 5조제 9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습상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유원장과 유희실, 보통교실과 유희실, 원장실과 사무실을 서로 겸용할 수 있다. 다만, 유희실을 유원장으로 겸용하는 경우에는 제 3조제 5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교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 16조중 “교사대지”를 “교사 또는 원사대지”로, “체육장”을 “체육장(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원장을 말하되, 제 12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희실을 유원장과 겸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교사·교구의”를 “교사(유치원의 원사를 포함한다)·교구의”로 한다.

제 18조의 제목 “(시행세칙)”을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 3조제 2항 각호, 제 5조제 1항제 1호 및 제 2항중 “평방미터”를 각각 “제곱미터”로 한다.

부 칙

① (시행령)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대변기의 반당 기준수가 이 영에 의한 기준수에 미달되는 유치원은 1982년 6월 30일까지 이 영에 의한 기준수를 갖추어야 한다.

◇ 學校施設·設備基準令 改正理由

幼稚園의 幼園場의 最小 基準面積을 200제곱미터 이상에서 150제곱미터 이상으로 緩和함으로써 幼稚園設立을 위한 用地確保의 어려움을 解消하여 就學前教育을 위한 幼稚園의 增設을 誘導하며, 기타 幼稚園의 施設·設備基準令 不明瞭한 部分을 補完하여 이를 明確하게 하려는 것임.

◇ 主要骨子

가. 幼稚園의 幼園場의 最小 基準面積을 200제곱미터 이상에서 150제곱미터 이상으로 緩和함. (令 第 3條 第 3項)

나. 學習上 支障이 없는 한 幼園場과 遊戲室은 서로 兼用할 수 있도록 하되, 遊戲室을 幼園場으로 兼用하는 경우에는 文教部令으로 정하는 施設을 갖추도록 함. (令 第 12條 第 2項 新設)

다. 幼稚園의 園舎에 두어야 할 施設중 변소(대변기)의 設置基準에 관하여 明文規定이 없던것을 明文化함. (令 第 5條 第 9項) (법제처 제공)